

제도개선연구위원회 보고서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규정 개정안



노동조합 제도개선연구위원회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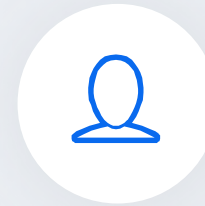
- 노동조합 의사결정 체계(기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연구위원회 발족
- 의사결정기구 정비, 노동조합 운영규정 제정,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
(2차년도 핵심사업 내용에서 발췌)

17대 노동조합의 약속



-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을 위한 명실상부한 대의기구로서의 대의원 조직 정비 필요

대의기구로서의 대의원회 조직 정비



- 대의원의 선거구(직급, 직능)별 선출을 통한 현장 조합원의 의사 반영 구조 획기적 개편 필요

현장 조합원 의사 반영 구조 개편

2 개편 사유 및 주요 개선 사항

개편 사유

- 현행 대의원 체제는 구조적으로 각 직급·직능별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 및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
- 대의원 선거구를 직급·직능별로 나누고 선거구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대의원 선출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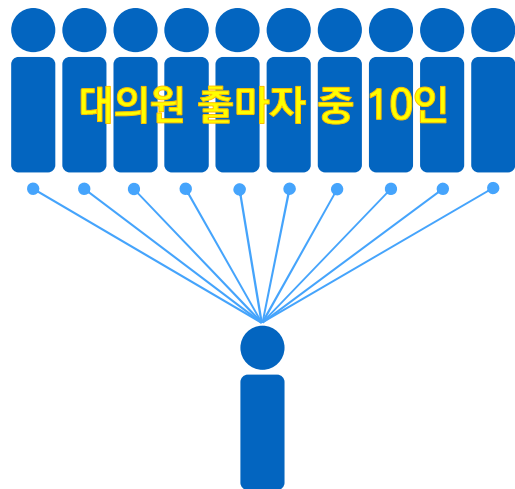
주요 개선 사항

- 대의원의 선거구별 선출
-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부여
- 임기 내 인사이동에도 대의원 자격 유지 등
- 대의원회에서 회계감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규약의 개정에 따른 관련 선거관리규정 정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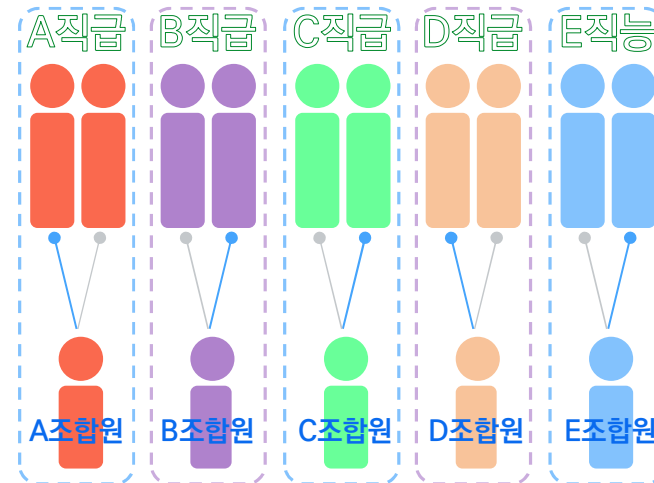
주요 개선 사항: 대의원 선출방식 개선 (1)

현행 대의원 선출방식



- 1인 10표 투표로 다득표자 10인 선출
- 대의성 불분명: 대변해야 할 조합원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직급·직능 구분 없음)

대의원 선출방식 개선안



- 대변해야 할 조합원을 직급·직능 구분하여 특정화
- 직급·직능별 조합원 수에 비례한 대의원 선출
-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보다 가까이서 듣고 조합 운영에 반영

4 주요 개선 사항: 대의원 선출방식 개선 (2)

직종 및 직급에 대한
대의권역 구분없이
총 10명 선출

현행 대의원 수

직급 및 직능별 19명
+2명(위원장,부위원장)

직급 · 직능	대의원수	조합원수
4급	3명	29명
5급	4명	42명
6급	4명	39명
7급	4명	41명
8급	2명	20명
9급	1명	10명
관리운영직	1명	15명
계	19명	196명

변경 시 대의원 수(안)

- 조합원 10명당 대의원 1명으로 선출
- 1단위 6명 이상일 때 1명 추가 배정
(예시)
15명→1명 배정
16명→2명 배정
- 위원장·부위원장은 당연직 대의원

주요 변경사항(안)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조문 대비표

1. 규약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 2 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 대의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10인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과 선출 및 임기) ①대의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선거구별 조합원 10인당 1인으로 선출하며, 단수 6인 이상일 때 1인을 추가 선출할 수 있다. ③대의원의 선거구는 직능,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하며, 승진, 전보 등의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유지한다.	⇒ 노조법 및 한국노총 규약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조합원 수 비례 선거구 설치 반영,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체계와 동일하게 조정. ※한국노총 표준안: [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대의원은 (부서별/지역별) 선거구에서 조합원 ○○명당 1명씩 선출하며, 단수 ○명 이상일 때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제18조(임원선출 및 임기) ①의장선출은 대의원 2/3이상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이 호선한다. ②총무는 의장이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의장은 대의원회를 총괄하며, 대의원회를 대표한다.	제18조(임원 및 권리와 의무) ①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좌 동> ③대의원은 선거구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회에서 발언 및 표결할 권리와 각종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④대의원은 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대하여 회의 참석 전에 이와 관련한 선거구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대의원회에서 대변할 의무를 가진다.	⇒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체계 반영, 대의원의 기본 역할(권리와 의무) 명시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20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총회 소집요청 2.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총회에서의 수입사항 집행 4. 조합운영방침 및 정책수립에 대한 심의 5.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심의 6. 각종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7.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8. 예 결산에 대한 심의 9. 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 10. 단체협약 안 심의 11. 노사협의회 소속단체 파견 대의원 선거인 및 교내 각종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의 추천 심의 12.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심의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기능)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7. <u>회계감사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출</u> 8. <좌 동> 9. <좌 동> 10. <좌 동> 11. <좌 동> 12. <좌 동> 13. <좌 동>	⇒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체계 반영
제 4 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u>총회에서</u>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4 절 회계감사 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u>대의원회에서</u> 선출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체계 반영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 5 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25조(구성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u>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u>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 5 절 선거관리 위원회 제25조(구성과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u>대의원회에서</u> 선출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일반적 노동조합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체계 반영
제 5 장 회 의 제27조(성립 및 의결)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 5 장 회 의 제27조(성립 및 의결) 본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집합대면회의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회의 및 의결할 수 있다.</u>	⇒ 비상 상황의 환경 고려 반영
제 6 장 임 원 제30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3명	제 6 장 임 원 제30조(임원)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삭 제> 3. <좌 동>	⇒ 임원에서 선출직이 아닌 사무국장 제외(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별도 선임)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 임원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u>다만, 사무국장과 회계감사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u>	제31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① <좌 동> 1. <좌 동> 2. 임원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u>다만,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u>	⇒ 임원에서 사무국장 제외 및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2.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u>임원(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대의원, 회계감사)을</u> 선출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서 신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규약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u>임원(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및 대의원을</u> 선출할 때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u>다만 회계감사 선출은 규약 제4절에 따른다.</u>	⇒ 임원에서 사무국장 제외
제 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이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5명을 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선거관리위원 <u>약간명을</u> 둔다.	⇒ 규약 제25조 선관위 구성 조항에 따름
제5장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시 금지사항) ①입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다음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향응제공 2. 인신공격, 중상모략 3. 타 후보의 정당한 선거운동 방해 4.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조합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장 선거운동 제11조(금지사항) 선거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 또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지원을 받거나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입후보 등록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5. 조합원 또는 선거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6.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	⇒ 공정 선거를 위한 부정선거행위 금지조항 정비 제안 ☞ 한국노총 임원선거 관리규정 참조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12조(벌칙) 제11조 각 항에 위반하는 입후보자에 대해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경고하고 입후보자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을시 등록이 취소된다.	제12조(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각 후보자측의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제11조의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는 <u>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제11조 제5호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곧바로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u>	⇒ 공정 선거를 위한 부정선거행위 금지조항 정비 제안 ☞ 한국노총 임원선거 관리규정 참조
제6장 선거방법 제13조 본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대의원 10인을 선출한다. 단, 사무국장 및 회계감사의 선출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선거방법 제13조 본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u>선거구별 대의원을 선출한다. <단서 삭제></u>	⇒ 규약 제2절(대의원회) 개정안에 따른 수정 제안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③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시에는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다수득표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2차 투표에서 양 후보의 득표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③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 후보자가 2인일 경우는 1차 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2인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2차 투표에서 양 후보의 득표가 동일할 경우 3일 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 노조법 및 규약의 “선출”에 따라 선거행위로 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15조(대의원 선출) <u>대의원 선출은 입후보자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되고, 1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의해 10인을 기표하고 1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u>	제15조(대의원 선출) ① <u>대의원 선출은 규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선거구별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선출한다.</u> ② <u>선거구는 규약 제17조에 의거, 직능, 직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에서 확정안을 대의원회로 제안하고, 이를 대의원회에서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 통보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 공고 시에 조합원에게 공지한다.</u> ③ <u>선거구별 배정 인원 대비 후보자가 같거나 적을 경우 후보자별 찬반투표로, 초과할 경우 1인 1표 기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u>	⇒ 규약 제2절(대의원회) 개정안에 따라 수정 제안
제16조(사무국장 선출) <u>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선출된다.</u>	제16조(사무국장 선출) <삭 제>	⇒ 임원에서 사무국장 제외
제17조(회계감사 선출) <u>회계감사(3인)는 총회에서 호선을 받아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u>	제17조(회계감사 선출) <삭 제>	⇒ 규약 제5절(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른 삭제
제7장 투표 및 개표 제18조(투표장소 및 시간)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u>선거관리위원회</u>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장 투표 및 개표 제18조(투표장소 및 시간) ②투표를 개시하기 전까지 <u>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u> 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투표장소 및 시간”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게 관리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20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신설>	제20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 투표함 등의 봉쇄 봉인과 관련한 사고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설 제안 (※참고: 공직선거법 준용)
제21조(투표함 등의 송부 및 보관) <신설>	제21조(투표함 등의 송부 및 보관) ①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이송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은 사전에 보관 지점의 CCTV 정상작동 및 녹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상 설치 장소를 개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이송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참관인 1인 이상 동반하여야 한다.	⇒ 투표함 잔여 투표용지의 관리와 관련한 사고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조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 취지
제21조(개표관리) ①당해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②부재자 투표는 개표 시 합산하여 개표한다. ③개표의 유·무효 결정은 공직선거에 준한다. ④<신 설> ④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1명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입후보자는 개표에 참관할 수 없다. ⑥<신 설> ⑦<신 설> ⑧<신 설>	제23조(개표관리) ①당해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서 개표한다. ②부재자 투표는 개표 시 합산하여 <u>개표한다.</u> ③<좌 동> ④<u>개표순서는 위원장(부위원장) 선거, 대의원 선거의 순으로 한다.</u> ⑤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2명 이내로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u>하며</u>, 입후보자는 개표에 참관할 수 없다. ⑥<u>참관인은 개표소 내의 개표상황을 순회·감시할 수 있으며, 개표에 대한 감시 이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 ⑦<u>개표장에는 영상녹화장치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 개표상황을 녹화한다.</u> ⑧<u>기타 개표과정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 측 참관인과 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u>	⇒ 공정한 개표 관리 및 사고(분쟁) 방지를 위한 개정 및 항 신설
제22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선관위는 <u>개표가</u> 종료 후 즉시 개표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 봉인하여 조합에 보관한다.	제24조(개표결과 보고 및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선관위는 <u>개표</u> 종료 후 즉시 개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개표 종료 후 투표용지 및 선거인명부 등 각종 선거관련 자료를 참관인의 입회 하에 선거관리위원회 봉인하여 <u>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합에 2년간 보관한다.</u>	⇒ 개표 결과 공정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제안